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2022. 7.



한국물기술인증원

목 차

제1장 총칙	5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인증절차 및 방법	7
제4조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등	
제5조 심사계획 수립·통보	
제6조 공장심사	
제6조의2 심사 재신청	
제7조 시료재채취	
제8조 제품시험	
제9조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제10조 인증심의 결과통보 등	
제11조 처리기간	
제12조 인증서 발급	
제13조 인증의 유지	
제14조 인증내역 변경	
제15조 인증서 재발급	
제16조 인증서 반납	
제17조 인증서 통합	
제18조 인증서정보망 접근 권한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등	17
제19조 인증심의위원회	
제20조 인증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21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2조 전문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3조 제척·기피·회피	
제24조 서면결의	
제4장 인증심사원 운영	20
제2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6조 인증심사원 운영 방식 및 자격정지 등	
제27조 인증업무 지원	

제28조 수당 등 지급

제5장 사후관리	22
제29조 정기검사	
제30조 수시검사	
제31조 사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32조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33조 인증정보의 게시 및 관리	
제34조 보고	
별표1. 위생안전기준인증 세부절차	27
별표2.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심사여부	28
별표3. 사후관리 업무 절차	31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심사 참관확인서	32
별지 제2호 서식. 위생안전기준 공장심사보고서	33
별지 제3호 서식. 제품시험의뢰서	44
별지 제4호 서식. 윤리 서약서	45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서	46
별지 제6호 서식. 시료재채취 신청 동의서	47
별지 제7호 서식. 인증심사 불합격 개선조치 보고서	48
별지 제8호 서식. 불합격 결과 의견제출서	49
별지 제9호 서식. 불법·불량 의심제품 신고서	50
별지 제10호 서식. 불법·불량 의심제품 신고 위임 및 협조 동의서	51

위생안전기준인증 운영요령

제정 2019. 12. 12.
전면 개정 2021. 11. 30.
2차 개정 2022. 0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이라 한다.)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요령은 인증원이 KC인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요령세부규칙 등으로 정해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요령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신규, 변경, 정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서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4. 인증등록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경부령을 말한다.

② “위생안전기준인증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증규칙 제 8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 라 한다)가 발급된 제품을 말한다.

③ “수수료” 라 함은 인증 신청자가 부담하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인증 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신청서류” 라 함은 인증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기업” 이라 한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공장심사” 라 함은 인증규칙 제5조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인증심사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품시험” 이라 함은 인증규칙 제5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환경부고시)(이하 “공정 시험방법” 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4조의3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중 공장심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⑧ “심의위원” 이라 함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⑨ “정기검사” 라 함은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인증제품의 지속적인 위생안전기준 인증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⑩ “수시검사” 라 함은 수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⑪ “인증변경” 이라 함은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 및 추가, 모델명 변경 등 인증범위 변경 사유 발생시 인증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⑫ 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는 KC인증 절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하거나 불응,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 인증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증원과 **인증신청기업**이 협의한 공장심사 일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 연기하거나 15일 이상 인증원에 응답, 회신하지 않는 경우
- 나. 수수료 납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공장심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다. 수시검사 시, 제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라. 서류보완을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거나 2회이상 인증원의 서류보완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 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2회이상 수수료 납부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 바. 검사기관에 제품시료를 7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거나 시험수수료를 검사기관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
- 사. 공장심사에서 시료 부족으로 재채취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료재채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아. 인증신청기업과 무관한 기업이나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공장심사에 개입하는 경우
자. 제품의 시료채취 시 특정 시료채취 강요 등 인증심사원의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차. 특정한 인증심사원 배정 및 검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카. 기타 인증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
- ※ 이 때,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공장심사를 진행할 인력 등의 여건이 부족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시료준비 미비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심사에서 시료미채취인 경우 준비가 미비한 시료에 대해 추가로 시료 재채취를 신청해야 한다.
- ※ 신규, 변경신청의 경우, 심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사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⑬ “검사기관” 이라 함은 수도권법 제14조의3에 따라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⑭ “인증서 통합” 이라 함은 분류체계가 동일한 제품인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하나의 인증서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⑮ 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에서 말하는 소요일수 등의 산정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2장 인증절차 및 방법

제4조(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등) ①인증신청기업은 ‘인증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

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규칙 제4조의 따른 제출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 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신청기업은 인증을 취득하고자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류를 작성해야하며, 인증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범위가 누락되어 인증을 취득한 경우 변경신청을 통하여 인증범위를 변경하여야한다.

②인증원장은 인증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시 신청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및 모델명 등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제출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한 제품과 제출자료가 상이한 경우
3. 신청제품 제조공장 주소, 기타 사용내역 등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
4. 신청제품의 모델명 및 모델별 제품 사진 누락 등의 사유로 기타 인증원장이 자료보완을 요구할 경우

④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인증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증신청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전체 보완 소요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⑤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원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재난 등의 상황으로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 기간의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⑥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다.

1. 대상제품 적용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이 없는 자 또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3. 제4항 및 제5항의 보완요청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⑦인증원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수수료를 고지하고, 인증신청기업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납부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다.

⑧인증원장은 인증신청기업이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인증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중 3분의 1을 기업에 반환한다.

- ⑨인증신청 제품은 ‘인증규칙’ [별표 1] 및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이하 ‘인증고시’ 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제품 분류기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상세 분류체계는 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에 따른다.
- ⑩인증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인증심사원의 공장심사 후, 제출한 자료 중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 수립·통보) ①인증원장은 인증규칙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배정, 공장심사일자, 제품시험 여부는 [별표 2]에 따른다.
- ③인증원장은 인증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인증심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인증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 중 일부항목을 생략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인증원 담당자는 인증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인증심사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신청기업에 공장심사일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업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일 1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⑥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전에 공장심사 항목과 제품시험 항목 및 검사기관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인증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연속된 심사일정 또는 같은 일자로 묶어 진행할 수 있다.
- ⑧수수료를 납부한 인증신청기업은 15일 이내에 공장심사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비용납부 후 40일 이내에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⑨공장심사 진행 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고, 요청 후 7일 이내에 공장심사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 ①공장심사는 최종 생산제품의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장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인증규칙’ [별표 2] 및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환경부고시)에 따른다.

- ②합격기준은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고 100점 만점에 총점 80점(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합계의 80%)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인증심사원이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공장심사보고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제출한 공장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인증심사원에게 심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정하며, 해당 내역만 인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⑤인증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자재관리, 공정관리 및 제품의 품질관리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⑥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할 경우, 서류심사 또는 화상심사 등 인증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인증원장은 인증업무가 운영요령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원 담당직원 등의 참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증심사 참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관자의 여비 등은 인증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⑧인증심사원은 신청 제품 모델군의 추가 확인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을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인증신청기업은 15일 이내에 인증정보망에서 시료재채취 신청을 통한 추가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신청기업과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료재채취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정기·신규·변경심사는 각각 별개의 심사로, 같은 일자에 실시할 수 없다. (제29조 2항에서 이동)

⑩공장심사 당일 인증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불능으로 공장심사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⑪인증신청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인은 심사에 참관할 수 없다. (단, 해외공장심사 진행을 위한 에이전트 담당자 등은 제외한다.)

⑫OEM 등 해외수입 자재 및 제품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기업에게 관련 수출입서류(인보이스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심사 재신청) ①신규 및 변경신청 대상 제품심사 결과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인증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재신청 접수 시, 제품시험 부적합과 관련한 사항 확인 및 개선사항을 작성한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선조치 이행여부는 제품시험 시료 채취 시 인증심사원이 확인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품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④부적합 통보를 받았던 제품에 대해 재심사 진행 시, 로트번호 및 생산일자가 동일한 제품을 채취할 수 없다.

제7조(시료재채취) ①공장심사 시 인증신청기업의 시료준비 미비로 인하여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인증정보망에서 시료재채취를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료재채취 신청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료재채취는 2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료재채취를 신청하지 않을 시, 심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며 제3조의 제12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인증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시료를 재채취할 경우 인증심사원에 대한 심사비(수당, 여비, 교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시험) ① 인증원장은 제품시험을 실시 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되는 검사기관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시험의뢰서를 인증신청기업에게 교부한다.

②제품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호와 같이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품시험을 할 수 있다.

1. 제품의 내부부피가 20L 이상인 경우

2. 제품의 무게가 34kg 이상인 경우

③채취한 시료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만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방법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또한, 인증신청기업이 인증원에 인증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생안전기준 항목을 적용하여 실시한 제품시험은 KC인증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

④제품시험을 위한 검사기관 지정은 무작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시료채취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신청기업은 시료채취에 필요한 제품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때에는 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은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인증신청 품목에서 재질을 고려하여 물 접촉면적비(물과 접촉하는 제품의 면적/부피의 값)가 가장 큰 제품을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대표시료로 채취할 수 있다. 이 때, 대표시료채취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가. 인증신청제품의 물 접촉면적비가 가장 큰 제품
 - 나. 재질이 다른 경우 모든 재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다. 유사재질의 경우 위생안전기준 항목이 동일하더라도 대표시료를 별도로 채취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시 책임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증심사원은 운반이 쉽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제품에 인증심사원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5. 시료채취에 대한 품목별 세부사항은 공정시험방법에 따르며, 해당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기업**의 확인을 받아 시료를 재채취 할 수 있다.
6. 용출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제품시험에 재사용 할 수 없다.
7.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원에 시료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제품시험을 의뢰한 시료가 공장심사보고서 상 채취한 시료 정보와 상이한 경우
 - 나. 제품하자로 인해 용출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다. 시료부족으로 용출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⑥제품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시험성적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제품시험은 전처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인증신청기업**은 ‘인증규칙’ [별표 4]에 따라 제품시험수수료를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⑧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 중 유사재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위생안전기준 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제9조(인증심의위원회 개최) ①인증심의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인증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인증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한 인증신청업체는 인증원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해당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해당 자료를 인증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④인증원장은 인증 심의자료(공장심사보고서, 제품시험성적서,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증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⑤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인증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 ⑥인증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제품이 승인을 위하여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해당 사항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후 인증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의 결과통보 등) ①인증원장은 인증심의 결과를 인증신청기업, 행정처분 대상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인증심의 결과를 인증신청기업에게 통보 시 제품시험성적서 사본을 함께 제공한다.
- ③인증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시험을 위해 제출한 시료를 회수할 수 있다.
- ④인증심의위원회 일자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시료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⑤공장심사 불합격의 경우, 인증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 ⑥변경심사 완료 전 정기검사 진행 중인 인증서가 불합격일 경우, 변경심사는 철회된다. 단, 공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제품시험 결과에 따라 신규 인증서로 발급될 수 있다.
- ⑦인증원장은 정기검사·수시검사 부적합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 ①제4조에 따라 인증이 신청된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인증심의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은 50일로 한다. 단, 이 항목의 일수 계산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인증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영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신청수수료 납부 후 15일로 한다.
- ③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로 한다.
- ④해외공장심사인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예외로 둔다.

제12조(인증서 발급) ①인증원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결된 경우에 ‘인증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인증신청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공장심사보고서에 근거한 사항만 인증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업이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영문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지) ①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인증 조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품질유지 및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인증제품 및 포장에 ‘인증규칙’ [별표3]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인증기업은 인증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제6항 및 인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인증내역 변경) ①인증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항목에서의 일수 계산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생산공장의 이전
2.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3.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
4. 종류, 등급, 호칭 및 모델명 등의 추가

②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인증신청기업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현장 확인 또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인증원장은 인증기업이 인증내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인증규칙’ [별표 4]에 따른 인증수수료 및 필요 경비 등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인증기업은 변경하고자하는 정보를 신청 서류에 모두 작성하여야하며, 동일한 인증서에 대하여 한 건의 신청으로 여러 변경사유를 반영할 수 있다.

⑥불가피하게 신청 당시 제품의 변경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동일 인증서에 한해 공장심사 당일 인증심사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확인 후 변경사항을 추가 기재 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서 재발급) ①인증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정보망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상호, 대표자, 본사주소 변경
2.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3. 단순 모델명의 변경(단, 기인증받은 제품이 모델명만 단순 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재발급 신청 시, 정보 변경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 재발급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2.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인증기업의 사업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④제3항에 따라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회사 합병 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위승계를 하는 기업과 받는 기업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의한 인증서 재발급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⑥본사 및 공장주소가 동시에 변경될 시, 인증변경신청을 통한 현장평가를 우선한다.

제16조(인증서 반납) ①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인증서를 반납할 경우, 인증원장에게 공문으로 인증서 반납 요청을 해야하며 수도권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다.

②인증서 반납 시, 수도권법 제14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1개월 동안 그 인증기업(제조 공장)은 인증을 해당 제품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③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인증의 취소가 예정된 경우 인증서를 반납할 수 없다.

제17조(인증서 통합) ①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할 경우, 같은 제품명을 가진 인증서에 대해서만 통합이 가능하며, 인증원장에게 공문으로 인증서 통합 요청을 해야한다.

②공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1. 인증 제품명 및 인증번호
2. 기업명
3. 인증통합 요청 관련 내용
4. 문서번호 및 요청 일자
5. 대표이사 직인

③인증서 통합 시, 통합을 요청한 2개 이상의 인증서 중 정기검사 도래일자가 짧은 인증서로 통합된다.

④인증서 통합 시, 정기검사 도래일자가 긴 인증서는 자동 반납처리되며 종류, 등급 또는 모델명의 일부 통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통합된 인증서는 자동 반납처리된 인증서의 행정처분 사항을 포함한다. 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인증서는 통합될 수 없다.

제18조(인증서정보망 접근 권한) ①인증서는 인증기업(제조공장)에 그 소유가 있으며 인증기업이 인증정보망 접근이 불가하여 분실된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을 인증원에게 요청할 경우, 관련 공문을 인증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담당자 정보
3. 정보요청 발생사유 관련 증빙 자료 등
4. 문서번호 및 요청 일자
5. 대표이사 직인

③인증기업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으며,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를 포함한다)토록 할 수 없다.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등

제19조(인증심의위원회) 인증원장은 다음의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결과 등의 심의
2. 인증서의 재발급(단순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처분사항의 검토 및 심의
3. 위생안전기준인증 분류체계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검토 및 심의
4. 인증서 사용 용어 등 세부사항 검토
5. 기타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인증심의위원회 전문위원) ①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30인 이내의 인력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위생안전인증 담당자(당연직)
2. 인증원의 위생안전인증 담당 부서장(당연직)
3. 물산업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상하수도 관련 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환경, 토목, 기계, 재료 및 산업공학 계통의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을 가진 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연구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④인증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인증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인증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원 직원이 맡는다.

④인증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한 경우 성원된 것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⑤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인증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성원 및 안건 의결 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선임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증심의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또는 서면심의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간사는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보존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⑧인증원장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기술검토와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인증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척·기피·회피) ①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서면결의) ①인증원은 인증제품과 관련된 건을 심의할 경우 심의 및 의결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증심의위원회에 사전 선임된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심의서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 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 운영

제25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한국인정기구에서 KOLAS 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운영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품질경영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공공기관, 시험기관, 인증원 등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자
7. 인증원의 인증심사실 직원 등

②제1항의 실무경력은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2. 제품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3.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분야
4. 제품 환경성·품질 시험검사 분야
5. 환경부 및 인증원의 환경 관련 분야

제26조(인증심사원 운영 방식 및 자격정지 등) ①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 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상시평가 및 모집을 통하여 인력풀을 변동할 수 있다.

②인증원장은 인증신청기업에게 심사일정 계획 통보 시, 인증심사원 평가표 양식을 송부하여 기업에서 인증심사 후 회신을 하도록 하는 상시 피드백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기업 대표 또는 담당 직원 등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폭언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를 한 경우
2. 신청제품에 대하여 인증 고시에서 규정한 검증사항 이외의 자료 요구 또는 검증사항 이외의 시험의뢰를 요청하여 인증신청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시험성적서 및 제출 자료 검토 등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인증심사 대상이 되는 업체에 위원(직계 존·비속 포함)이 상업적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5. 인증심사 과정에서 월권행위 및 부당한 개입을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신뢰성을 저해한 경우

6. 인증원이 인증신청기업에게 공장심사 시 발송하는 설문조사에 특정위원의 비위사실 또는 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심사 사실이 3회 이상 **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④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접대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⑤인증원장은 전문위원이나 인증심사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원 또는 **인증신청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문위원 해촉이나 인증심사원 인력풀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⑥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또는 인력풀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심사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인증업무 지원) ①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에게 인증기준 관리나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인증원의 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인증원이 실시하는 분기 또는 반기별 인증심사원 교육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인증심사원이 인증원의 세부규정에 대해 공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28조(수당 등 지급) ①인증원장은 인증심사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원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의 수당은 **‘인증규칙’ [별표 4]**에 따라 2.공장심사수수료의 나.항목을 적용한다.

③인증심사원의 출장여비는 국내심사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5급 공무원 기준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적용되며, 해외심사는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른다.

제5장 사후관리

제29조(정기검사) ①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인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②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이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2년으로 조정한다.

③인증기업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자 전에 인증정보 망을 통해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인증규칙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를 경우, 2년 주기 내에 있는 인증서를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도래일자가 짧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일괄 조정될 수 있다.

⑤인증규칙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신청된 시점부터 인증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기존의 인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시검사) ①인증원장은 수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 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2. 민원, 신고를 받은 제품 중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수시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해당 공장에서 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④시료채취에 대한 품목별 세부사항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⑤인증원장은 수시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수시검사 불합격 제품의 인증취소 기준은 정기검사 불합격 제품의 인증취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수시검사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⑧ 수시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증원장은 시중 유통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불법·불량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사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시검사 대상 선정

2. 그 밖에 인증원장이 사후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수시검사 사업이 시행되는 날부터 만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제2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불법·불량제품 신고) ① 시중 유통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수도법 위반 제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인증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에 회신하여야 하며, 위법 사항 확인 시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

④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33조(인증정보의 게시 및 관리) ① 인증원장은 인증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 각호의 인증제품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34조(보고) 인증원장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인증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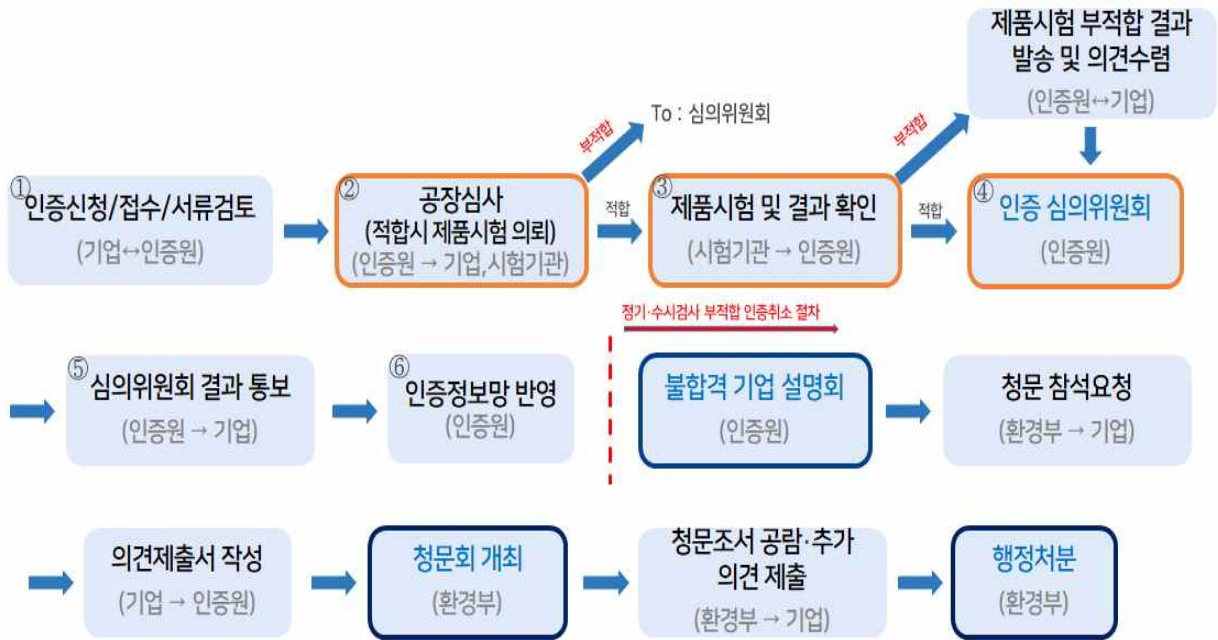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요령 시행일 전에 진행된 사항은 개정요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이 운영요령 시행일 전에 진행된 사항은 개정요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신설 >

위생안전기준인증 세부절차



1.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위생안전기준인증 필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2. (공 장 심 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연속적·안정적 생산 가능여부 심사
3. (제 품 시 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심사
4. (인 증 심 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인증제도 운영은 인증규칙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수행

[별표 2]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심사여부

가.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및 제품시험(국내인증) (1품목 기준)

신청구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제품시험
신규인증신청		2인	1일	실시
정기검사신청		2인		실시
변경 신청	생산공장의 이전	1인	1일	미실시
	인증제품보다 물 접촉 면적비가 작은 제품	1인	1일	미실시
	인증제품보다 물 접촉 면적비가 큰 제품	1인	1일	실시
	인증제품의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의 재질 변화 또는 재질 추가	1인	1일	실시
	기존 인증제품의 형상변화	1인	1일	검토후 결정 ¹⁾
	인증제품에서 도장을 한 주요부품의 재질변화 또는 추가	1인	1일	실시
시료재채취 ²⁾		1인	1일	실시
추가심사 ³⁾		1~2인 ⁴⁾	검토후 결정	-

- 1)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시험 시료의 물 접촉면적비보다 작거나 동일하며 동일 재질인 경우 제품시험은 면제, 접촉면적비가 크거나 상이한 재질의 경우 제품시험 실시할 수 있다.
- 2) 공장심사는 합격했으나 시료준비 미비로 인해 시료를 재채취를 할 경우
 - ※ 신청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일자에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공장심사 최대 심사제품 수는 신규·변경·정기심사 시 1일당 3품목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장 이전 및 시료재채취의 경우 1일당 5품목으로 한다.
 - ※ 신청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및 모델이 다양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심사일은 시료재채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 해외인증신청기업 심사 시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코로나19 등) 공장심사는 국내에서 실시 하되, 나. 항목(해외인증)에 따른 공장심사 소요일수를 산정한다.
- 3) 제품 수가 많은 경우 등 계획된 심사일수 보다 추가 심사일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4) 신규 및 정기검사는 인증심사원 2인, 변경신청은 1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심사량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신청구분별 인증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및 제품시험(해외인증) (1품목 기준)

신청구분		인증 심사원	공장심사 소요일	이동일	제품시험
신규인증신청		2인	2일	국가별 산정	실시
정기검사신청		2인			실시
변경 신청	생산공장의 이전	1인	1일		미실시
	인증제품보다 물 접촉면적비 가 작은 제품	1인	1일		미실시
	인증제품보다 물 접촉면적비 가 큰 제품	1인	1일		실시
	인증제품의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의 재질변화 또는 재질 추가	1인	1일		실시 검토 후 결정 ¹⁾
	기존 인증제품의 형상변화	1인	1일		실시
	인증제품에서 도장을 한 주요부품의 재질변화 또는 추가	1인	1일		실시
	시료재채취 ²⁾	1인	1일		실시
추가심사 ³⁾		1~2인 ⁴⁾	검토후 결정		-

1)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시험 시료의 물 접촉면적비보다 작거나 동일하며 동일 재질인 경우 제품시험은 면제, 물 접촉면적비가 크거나 상이한 재질의 경우 제품시험 실시할 수 있다.

2) 공장심사는 합격했으나 시료준비 미비로 인해 시료를 재채취를 할 경우

※ 신청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일자에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 공장심사 최대 심사제품 수는 신규·정기심사 시 2일당 3품목, 변경심사시 1일당 3품목으로 하며 생산공장의 이전 및 시료재채취의 경우 1일당 5품목으로 한다. 필요 시, [인증신청기업](#) 과 협의하에 심사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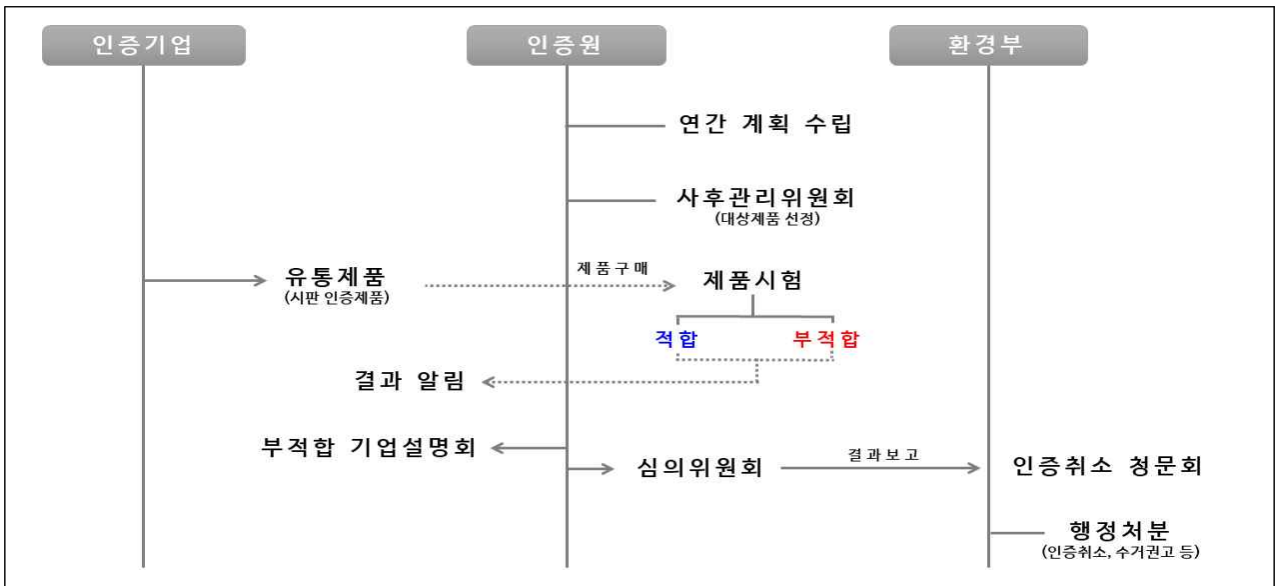
※ 신청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및 모델이 다양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심사일은 시료재채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3) 제품 수가 많은 경우 등 계획된 심사일수 보다 추가 심사일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4) 신규 및 정기검사는 인증심사원 2인, 변경신청은 1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심사량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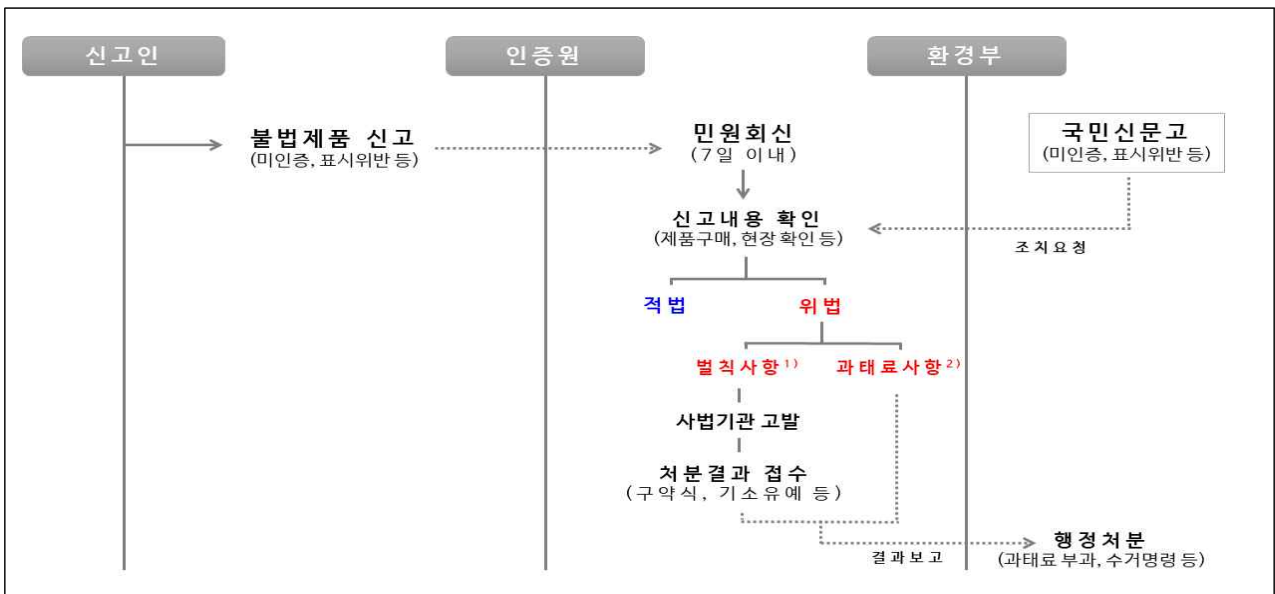
[별표 3] < 신설 >

사후관리 업무 절차

1. 수시검사 절차



2.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처리 절차



- 1) (벌칙사항) 미인증(인증취소 포함)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또는 인증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수도법 제83조 관련)
- 2) (과태료사항)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또는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수도법 제8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심사 참관확인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공장심사 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업종	
	주 소			
	제 품 명		신청구분	
	품질관리담당자	부서/직책: 전화:	성명: 휴대전화:	서명: 일자:
공장심사일	심사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변경심사 <input type="checkbox"/> 정기심사		
	심사기간			
	역할구분	<input type="checkbox"/> 인증심사원 <input type="checkbox"/> 참관인		
심사반 구성	역 할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	참관인
	성 명			
심사 훈련/참관 내용	심사결과 요약			
	심사훈련 내용 (또는) 심사참관 소감			
확 인	피심사조직 (품질관리담당자)	성명:	서명:	일자:
	심사반 (인증심사원)	성명:	서명:	일자:
	인증기관 (인증책임자)	성명:	서명:	일자:
첨 부	<input type="checkbox"/> 공장심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진(심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해당 시 참관인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위생안전기준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공장(회사)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E-mail					
신 청 품 목				종류 및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사 결과	심사사항	심사 항목수	배점	평 가 내 역				총평점	판정
				상	중	하	점수		
	자재의 관리								
	공정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계									

- 주) 1.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평가내역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원 성명 : (인)

인증심사원 성명 : (인)

인증범위 확인 내용

1.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 현황

1) 제품명 :

용도 :

종류·등급 및 호칭			모델
종류·등급	호칭	비고	
		주요재질 (물접촉)	

*인증심사 신청 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참고사항이며, 공장심사에서 인증심사원이 확인하여 기재한 사항만 인정함

위와 같이 위생안전기준인증 신청범위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입회자>

(인) 대표이사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인)

2. 공장심사기준 및 평가

○ 심사항목별 평가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1. 자재관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상 : 자재별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실정에 적합한 경우	10		
	중 : 자재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6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상 : 자재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사내 표준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10		
	중 : 자재별 검사방법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6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상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인수 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	10			
중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인수 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6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심사 항목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2. 공정 관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별 관리항목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상 :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 관리 주기, 관리 데이터의 활용 등)이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 :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4 1		
	②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관리하고 있는가? 단) 공정상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생략 상 :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두고 합리적으로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두고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데이터관리가 미흡하거나, 일부 내용이 사내표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하 :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4 1		
	③ 공정별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현장작업자가 그 규정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 상 :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작업자가 그 방법에 따라 작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방법 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 : “중”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4 1		

※ 공정관리의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공정관리의 총점은 14점으로 함.

심사 항목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3. 제품의 품질 관리	<p>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품질기준(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표 및 표시사항 등)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p> <p>상 : 제품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7</p> <p>중 :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안전기준에 일부 항목이 맞지 않은 경우 4</p> <p>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p>			
	<p>②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p> <p>상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검사 기준(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시험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7</p> <p>중 : 제품의 시험·검사 기준이 “상”의 기준에 만족하나 일부 내용이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4</p> <p>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p>			
	<p>③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 할 능력을 갖추었는가?</p> <p>상 :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시험·검사 기준(사내표준, 시험방법, 적합여부 식별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하는 경우 8</p> <p>중 :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5</p> <p>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p>			
	<p>④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 및 기타 표시 등) 단, 신규인 경우 수도용KC위생안전기준 마크 생략</p> <p>상 :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수도용 KC위생안전기준 등을 사내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8</p> <p>중 :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시사항이 상이하거나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p> <p>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p>			

심사 항목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4. 제조 설비의 관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위해 설비의 운전표준, 운할점검, 일상 점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중: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가 회사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3 1		
	②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 설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 상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규정에 따라 점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3 1		
5. 검사 설비의 관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해 사내표준에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상 : 시험·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또는 외부 시험설비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 시험·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3 1		
	②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해 적정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검사설비의 정밀 정확도를 위해 교정주기, 점검, 외부시험설비 이용 등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중 :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일부가 회사 실정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하 :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3 1		

3.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품목	종류·등급	재고량	시료 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및 제조일자)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용출시험(일반수도용 자재 또는 급수설비 등의 여부) ○ 적용항목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의 별표1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 시험방법 :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 판정기준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별표1의2(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적용)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름

다. 공시체 제작방법 :

라. 시험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NO	구분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공칭능력 (제원, 정밀도)	제작사	설치년월	비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NO	구분	보유설비명	보유 대수	공칭 능력 (제원, 정밀도)	제작사	설치년월	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고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제품분해 사진대장

사진1	사진2
사진1 설명(물접촉 여부 등)	사진2 설명(물접촉 여부 등)
사진3	사진4
사진3 설명(물접촉 여부 등)	사진4 설명(물접촉 여부 등)

위와 같이 인증신청 제품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품시험의뢰서 (00심사용)		용도	별브 및 이음쇠 보정여부
		일반수도용 자재 및 급수설비	
수 신 : 제 목 : 위생안전기준 인증 품질시험 의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p>			
① 품 목	② 종류·등급 또는 호칭	③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④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용출시험(일반수도용 자재 또는 급수설비 등의 여부) ○ 적용항목 :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위생안전기준)의 별표1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 시험방법 : 환경부 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 판정기준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별표1의2(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적용)
주 : 검사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 한국물기술인증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전화번호 : 직 위 : 인증심사원 성 명 :			
첨부물 : 시험분석 시료			

[별지 제4호 서식]

윤리 서약서

1. 본인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인증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이 없이 인증심사원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수행 중 논의된 사항 및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만일, 위의 서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6조에 따라 인증원장이 취하는 조치(인증심사원 자격정지 등) 등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또는 서명)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서

○ 심의 차수: 제 00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 안전

1. 위생안전기준인증 판정안전: 00개사 00개 제품

- 신규 및 변경: 00개사 00개 제품

- 정기: 00개사 00개 제품

2. 사후보고: 00개사 00개 제품

3. 분류체계 개정(안):

위 의안을 운영규정 제24조(서면결의)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안 건 명	위생안전기준인증 판정안전: 00개사 00개 제품	가 결		부 결
	사후보고: 00개사 00개 제품	가 결		부 결
	분류체계 개정(안)	가 결		부 결
의견				

상기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 의 위 원 : (인)

[별지 제6호 서식] < 신설 >

시료채취 신청 동의서

기업명 :

공장심사일 :

신청구분 :

○ 신청제품(시료번호) :

신청사유: (예: 시료 준비 미비, 신청제품 관련 추가 확인 필요 등)

상기 사유로 인하여 배정된 공장심사일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동의하며, 심사 완료를 위하여 15일 이내에 인증정보망에 시료채취를 신청해야 함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 (서명)

담당자 : (서명)

확인자 : 한국물기술인증원 (서명)

확인자 : 한국물기술인증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 신설 >

인증심사 불합격 개선조치 보고서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공장 소재지			
불합격 제품정보	인증번호/접수번호		제품명	
	불합격 판정 일자		제품시험 기관	
	불합격 사유			
개선 조치사항				
<p>신규/변경/정기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생안전기준인증 불합격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선 조치 내용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대표이사 : (서명)</p> <p>담당자 : (서명)</p> <p>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p>				
유의사항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신고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신설 >

불합격 결과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생안전기준인증 제품시험 부적합 건(신규/변경/정기심사 불합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신규/변경/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품 심사 불합격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 신설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인증 위반 의심제품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신고인	기업/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신고사항	제품분류	<input type="checkbox"/> 관류 <input type="checkbox"/> 밸브류 <input type="checkbox"/> 펌프류 <input type="checkbox"/> 수도꼭지류 <input type="checkbox"/> 수도미터류 <input type="checkbox"/> 도료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품명		위반 항목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공급 <input type="checkbox"/> 판매	
	모델명		기업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반 사항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상세히 작성)	※ 해당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사항 및 첨부 서류를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 불충분 시 접수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도권법 제14조제2항 및 8항을 위반한 업체 및 대표자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및 신고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구분	내용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처리목적	본인확인 및 신고접수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접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 신고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 신설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위반 의심제품 신고 위임 및 협조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위임인	기업/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주 소				
비고					
본 신고와 관련하여 고발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p>협조 동의서</p> <p>위임인 000은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의심 제품 신고에 대한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수임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요청 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함을 동의합니다.</p>					
<p>위 조건에 따른 협조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p>본인확인 및 신고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구분	내용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처리목적	본인확인 및 신고접수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p>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p>					

※ 신고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